제79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정안(해양수산부)	1.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세부사항(신설)○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시행규칙 제37조 제1항관련 별표6, 별표7)에서 정한대로 시설, 품질, 안전 및 원산지관련 해당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함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기본요구사항) 영업신고·등록·허가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품목제조보고된 수산가공식품, 음식점등에서 가공식품 형태로 판매 제한의 인증대상에서 영업장을 밖에서 가공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제한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기준) 95%이상의 재료가 동일한 국가산으로 농수산물 함량은 수산가공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계산-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진 방법외에 인증기관의 장이 타당한 사유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인증종류 및 표시기준) 특정국가산 95%이상인 경우와 특정국가산100%인 경우에 대하여 명료화- (기타 요구사항)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의 구분 관리 등- (수산가공식품·음식점 등 개별사항) 원료조달·생산·판매 등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경영관리, 작업장의 시설기준, 취급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해 해당법령을 반영하여 명료화	
2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안 (농촌진흥청)	1.농약의 변경 등록 제한(강화) 다미노자이드 수화제와 네오아소진 액제의 적용대상 작물 추가나 병해충 범위 변경 등록 제한	1.비중요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수산부)	1.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기준(신설) ○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기준 추가 -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1.비중요
4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해양수산부)	1.공해 저연승어선 승선 옵서버 승선일 비율 상향 (강화)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혼획관련 어업 수입금지 조치 시행 및 동등성평가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혼획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공해 저연승어업'에 대한 미국 동등성평가 신청을 위해 옵서버 승선일 기준을 100%로 상향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공해 저층어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관련 의무(신설)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혼획관련 어업 수입금지 조치 시행 및 동등성평가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혼획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공해 저연승어업' 등에 대하여 미국 동등성평가의 필수요소인 위해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시행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1.비중요 2.비중요
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1.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방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환경부)	법(강화) 기존 규제내용에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시험방법을 추가 □ 신설/강화 내용 ○ 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 지정(한국환경공단, 제4조) ○ 운행 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제도 신설을 위한 인증시험방법 추가(별표3의1) - (시험모드)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모드인 WMTC(World Motorcycle Test Cycle)로 시험 실시 - (측정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및 질소산화물(NOx) 평균치 산출 - (시험 방법·횟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험만 1회 실시 - (배출가스 저감효율* 평가 조건) 저감효율 평가는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배출오염물질의 성능효과 여부를 평가*함 ＊M(교체용 저감장치 배출가스 평균값) ≤ G(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값) 조건 평가 -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제외) 교체용 저감장치 저감효율시험* 결과서와 내구성능시험**결과서 제외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국내 신규 인증 과정에서 저감효율시험 및 내구 성능시험 예정) ＊저감장치의 배출오염물질 성능효과 여부 평가 ＊＊저감장치의 제품이 변하지 않고 오래 견디는지에 대한 장치의 내구성 평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관리기준(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경우의 구체적인 관리기준* 신설 *불투명도 기준, 행정청 사전, 사후보고, 불투명도 측정 및 모니터링 시간 등	1.비중요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	1.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신설) 현행 법령상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수”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가 시험을 통과한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만, 자격요건은 자격 부여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형식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함이 타당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을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향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8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1.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허용 기간 제한(강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하고자할 경우, 직전에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부터 16개월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 5톤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함)	1.비중요
9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경영의 건전성 기준(신설)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건전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의 건전성 기준을 규정 2.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제한(신설)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준하여 매입한 채권의 중도상환 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신설) - 신설(강화)규제내용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종류,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시행능력과 건전성이 인정되는 시행자 등 세부요건, 인정사업자 대상 사업 범위를 규정 2.정비사업채권 매입 의무(신설) - 신설(강화)규제내용 :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중 정비사업시행자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구체화,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을 별표로 명확화	1.비중요 2.비중요
11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1.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신설)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정함	1.비중요
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수검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강화) (1) 집합투자재산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현실화 (개정안 제12조제1항) ㅇ 감독분담금 상한의 준거지표로서 금융회사의 총자산 기준 외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기준을 추가함 ㅇ 금융회사 분담료 상한을 '총자산의 0.15% 또는 운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中 큰 금액'으로 변경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1:5)은 지배구조법 사례 준용 (2) 감독·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개정안 제12조제4항) ㅇ 금감원의 수지차액 중 '수입 초과액(수입결산-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ㅇ '지출 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 (3)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 제12조제1항) ㅇ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ㅇ 동 개정규정을 근거로 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감독분담금(=추가 분담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친환경자동차 검사기준 및 시정의무 부과(신설) 가.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1) 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불량,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을 자동차검사 부적합 기준에 추가 2.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정기검사 실시장면 영상관리 의무 부과(신설) 나. 자동차검사 장면 영상촬영 방법 구체화 등(안 제80조의3) 1) 자동차검사장면 촬영시 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방법을 구체화 3.정비업자의 교육 이수의무 부과(신설) 마.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안 제135조의2) 1)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로 이에 대한 정비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정비기술인력이 전기차 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정비교육기관에 서류발급 및 시설장비기준 준수의무 부과(신설) 바. 정비교육기관에 서류발급 및 시설장비기준 준수의무 신설(안 제135조의2, 별표 26의3 신설) 1)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증가로 이에 대한 정비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및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 정비기술인력이 전기차 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 신설(신설) 사.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1) 전기자동차 충전구 절연저항 측정 등 일부 검사만 도입 시행하던 것을 전자장치진단기를 활용한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까지 검사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신설)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 ㅇ (개정사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인하여 단기 취득 토지에 대한 택지공급 등 투기 유인 상존 ㅇ (개정내용)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5년 前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 부여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구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前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투기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 제한 ㅇ (적용례)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신설) ㅇ (현행) 토지 소유기간 등에 따른 공급기준의 부재로 주민공람 직전 토지 매입(단기취득) 시에도 택지공급이 가능하여 투기우려 상존 ㅇ (개정내용) 주민공람 1년 前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 마련	1.비중요